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88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서미화 · 이광희 · 박홍배
서영석 · 조승래 · 김한규
이수진 · 김남희 · 김준혁
박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약국은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로서, 불법 개설·운영 행위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질 운영 구조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 나. 안 제5조제21호마목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관할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함(안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제6조제1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조제21호마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약사법」 중 약
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21의2. ~ 53. (생략)</p> <p>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p> <p>1. ~ 17. (생략)</p> <p>18.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p> <p>가. ~ 라. (생략)</p> <p><u><신설></u></p> <p>18의2. ~ 50.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단속 사무</u></p> <p>21의2. ~ 53. (현행과 같음)</p> <p>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p> <p>1. ~ 17. (현행과 같음)</p> <p>18. ----- ----- -----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제5조제21호마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약사법」 중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u></p> <p>18의2. ~ 50. (현행과 같음)</p>
---	---